

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52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8. 17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과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의 개정에 따라 용어와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, 생산·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의 개정에 따라 용어와 인용조문을 정비함(안 제4조 등).
- 나.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의 개정에 따라 용어와 인용조문을 정비함(안 제21조 및 제22조).
- 다. 생산·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 감면규정을 신설함(안 제27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기 타
 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 - 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 - (3) 입법예고 : 2009. 7. 24 ~ 8. 13 / 접수 의견 없음

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, 제17조제1항·제2항·제3항중 “행정·보존재산”을 각각 “행정재산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4호, 제19조, 제3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, 제32조제2항, 제32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, 제32조제4항·제5항 및 제35조중 “잡종재산”을 각각 “일반재산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4호, 제15조, 제16조제1항, 제1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18조중 “행정재산·보존재산”을 각각 “행정재산”으로 한다.

제3장 제목 “행정재산 및 보존재산”을 “행정재산”으로 한다.

제4장 제목 “잡종재산”을 “일반재산”으로 한다.

제21조중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6호를”을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”로 한다.

제22조 각 호외의 부분중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6의2호”를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7호”로 한다.

제23조제4항제5호중 “영 제29조제1항제14호”를 “영 제29조제1항제13호”로 한다.

제2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·연구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100분의 30 감경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) ① (생략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행정·보존재산</u>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</p> <p>4. <u>잡종재산</u>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</p> <p>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(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)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<u>행정재산·보존재산</u>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장 <u>행정재산 및 보존재산</u></p> <p>제15조(관리) 재산관리관은 <u>행정재산·보존재산</u>의 유지·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제16조(사용·수익허가의 제한) ① <u>행정재산·보존재산</u>을 사용·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,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행정재산</u>----- ----- -----</p> <p>4. <u>일반재산</u>----- ----- 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-----<u>행정재산</u>-----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장 <u>행정재산</u></p> <p>제15조(관리) -----<u>행정재산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16조(사용·수익허가의 제한) ① <u>행정재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②행정재산·보존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·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	<p>②행정재산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7조(관리위탁) ①시장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·보존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용·수익허가의 대상범위, 허가기간, 연간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·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·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·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·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17조(관리위탁) ①----- -----행정재산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-----행정재산----- ----- -----행정재산----- ----- -----</p> <p>③-----행정재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8조(준용) 행정재산·보존재산 사용료의 요율, 일시 사용허가,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·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0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18조(준용) 행정재산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4장 <u>잡종재산</u></p> <p>제19조(연고권 배제) <u>잡종재산을</u>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.</p> <p>제21조(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) 영 제9조제4호, 제23조, 제29조제1항제7호, 제30조, 제32조제3항, 제35조제2항, 제38조제1항제25호,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「<u>외국인투자 촉진법</u>」 제2조제1항제6호를 말한다.</p> <p>제22조(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·매각 대상)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「<u>외국인투자 촉진법</u>」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 대부·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6. (생략)</p> <p>제23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③ (생략) ④ (생략) 1. ~ 4. (생략) 5.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시의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6.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4장 <u>일반재산</u></p> <p>제19조(연고권 배제) <u>일반재산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21조(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「<u>외국인투자 촉진법</u>」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-----</p> <p>제22조(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·매각 대상) ----- 「<u>외국인투자 촉진법</u>」 제2조제1항제7호--- ----- ----- ----- 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3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영 제29조제1항제13호----- ----- 6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7조(대부료 감면)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제32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<u>잡종재산</u>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100분의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가 건립한 아파트, 연립주택,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<u>잡종재산</u>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<u>잡종재산</u>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27조(대부료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 ②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·연구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100분의 30 감경할 수 있다.</p> <p>제32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) ①----- ----- -----<u>일반재</u> <u>산</u>-----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----- -----<u>일반재산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③----- ----- -----<u>일반재산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 목적상 <u>잡종재산</u>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100분의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⑤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잡종재산</u>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100분의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④----- ----- <u>일반재산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⑤----- ----- -----<u>일반재산</u>----- ----- -----</p>
<p>제35조(신탁의 종류)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잡종재산</u>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 신탁·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(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)으로 한다.</p>	<p>제35조(신탁의 종류) ----- -----<u>일반재산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